

G-Welfare Weekly Report

01

재단 동향

경기복지재단의 청렴경영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유일의 복지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윤리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책임실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12월 9일은 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 입니다.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진행된 「UN 반부패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 재단도 12월 둘째 주를 '반부패 주간'으로 지정하여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복지발전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청렴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동반성장과 윤리·책임경영이 정착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재단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윤리경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의 경영철학으로 생각하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강화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고객들과의 청렴한 관계와 업무추진을 강조한 청렴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여 10대 실천원칙에 따라 윤리경영을 내외부적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 2015 경기복지재단 청렴경영 주요 추진실적 >

- CEO 및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 청렴서약식 실시(3월)
- 내부청렴도조사 : 평균 4.23점(전년대비 0.4점 상승, 공직기관 평균대비 0.32점 높음)
- 임직원 행동강령윤리내규 개정 : 부패행위자 징계양정 기준 마련
- 행동강령관(기획실장) 직급 상향지정 및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 전(全)부서 클린카드 집행실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앞으로도 우리재단 임직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과의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이 청렴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고, 나아가 경기도 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비윤리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재단의 윤리경영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02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

1. 윤리경영의 국제 기준

01 주요 내용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다국적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1979년 제정, 2011년 제 5차 개정안 발표
 - OECD회원국이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행동기준(standard of the activities)으로 11개장으로 구성되며,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2) ISO 26000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11월 1일 발표한 기업, 정부, NGO 등 사회주체들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 기업경영 신뢰도 평가,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유치의 변수, 사실 상의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

핵심주제	세부내용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구조에 있어 투명성, 윤리성
인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노동관행	불법 노동관행, 고용관계, 직장 보건·안전
환경	지속가능한 자원사용과 기후변화 대책
공정운영관행	부패·뇌물 수수 저지, 보복 없는 고발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등
소비자이슈	지속가능한 소비지향, 소비자 보호 정책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교육, 문화, 고용 창출,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정도

3) UN 글로벌 콤팩트

-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 윤리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0년 발족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가지 부문의 10가지 원칙을 제시

인권	원칙1 : 국제적으로 선포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2 : 인권 남용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	원칙3 : 집회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지지한다. 원칙4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제거한다. 원칙5 : 아동노동을 폐지한다. 원칙6 :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을 배제한다.
환경	원칙7 :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원칙8 : 환경적 책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착수해야 한다. 원칙9 :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반부패	원칙10 : 강탈,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항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2015년 12월
UN 글로벌 콤팩트 가입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01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88년 3월 제정하였으며, 그 회원인 사회복지사가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실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일반적 원칙을 제공
 - 사회복지사의 윤리 철학과 기준을 도덕성과 책임성, 서비스 개발과 전문성 증진, 지역사회와 지구촌 관계, 인권 문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윤리성 확보 등 명기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시설 역량(전문성, 열성, 도덕성)의 원천이 ‘윤리’ 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2001년 개정된 것으로 전문에는 사회복지의 이념 및 사명을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준수해야 할 준칙들을 6개의 조문으로 명시
 - 1)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 2)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 3)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4)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6)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사회복지사 선언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02 시사점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판단과 실천 기준이 될 수 있는 윤리강령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 업그레이드 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한 윤리마인드 제고 노력 필요
-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관평가 시 가점 적용 또는 윤리경영 우수기관 인증 등을 통해 복지현장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도입 필요

03

정책 동향

1.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공직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기업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함('16. 9. 28. 시행)
 - 채용·승진 인사개입 등 지위, 권한 남용에 대한 15개 유형 및 6개 예외 가이드라인 제시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 포상금 지급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으며, 공익침해 행위와 신고자 보호범 위 확대를 위해 개정('16. 1. 25. 시행)
 - 공익침해 행위와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를 위해 개정하여 내부 공익신고자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보상금액 상한액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 등 마련

2. 경기도, 전국 최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청렴도조사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추진역량 강화

01 주요 내용

- ‘사전컨설팅 감사’란 특정 사안이 감사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소극행정과 복지부동을 개선하는 제도
 - 2015년 9월까지 시·군 138건,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 받아 22건(64.8%)을 해결
-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외부 청렴도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
 - 내·외부 청렴도에 부패방지 시책을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종합청렴도 모델 도출
- 경기도는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조례’를 일부 개정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함
 - 조사대상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조사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으로 규정함

02 시사점

- 공익 및 부정부패 금지와 관련된 법률, 제도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내실화 필요
- 청렴도조사가 ‘등위’만을 강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자율적 통제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윤리기강 및 건전한 직업윤리 확립을 위해 직급·단계별 교육을 통합 지원하고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